

상담유형 세법상담-부가가치세

작성자 관리자

조회수 1604

등록일 2022-02-21

차량매각시 과세문제

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.

기존에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이 1대 있습니다. (세금계산서 수령 & 감가상각 처리 중)

레이싱이 취미인지라 추가로 사업과 무관한 스포츠카를 한대 매입하였습니다.

사업과 무관하기에 (업무무관승용차)

- 1. 매입시점에 세금계산서 수령x (사업용 아닌 개인용)
- 2. 개인사업자_재무상태표_차량운반구 자산등재 x / 소득세 감가상각처리도 x
- 3. 유류비, 보험료 등 각종 유지비 소득세 경비처리 x

하는 중입니다.

[질문]

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이 아닌, 지극히 개인_취미용_스포츠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 포지션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

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요?

(비사업용, 일시우발적 일회성 거래)

질문 첨부파일

답변

답변일 2022-02-22

안녕하십니까?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,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질의 내용의 경우 매입시점에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았고 해당 차량의 유지 관리 비용 등 모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로 이해되는데

이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.

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,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(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-0-2)

감사합니다.

답변 첨부파일

현행 법령내용 확인필